
2017년 13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7.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7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9. 4.(월) 10:00 ~ 11:25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정호경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직권심의 1건
 - (2017-27)‘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 재심의
 - (2017-41)2015년 시내버스 평가결과 중 00자동차의 세부 평가 항목별 점수
 - (2017-42)‘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 결재문서
 - (2017-43)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중 특정 업체의 직원 입·퇴사 현황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인용
 - 기각
 - 기각

【 의안번호 2017-27 직권심의 】

안건명 : ‘물품검사(수)조서-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위원장 최재희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성춘일 위원님, 전진한 위원님, 그리고 이유진 위원님, 정호경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 제2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직권심의 1건, 청구인 이의신청 2건, 제3자 이의신청 1건입니다.
- 의안번호 제2017-27호 수집연구과 소관 직권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소관부서 주무관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주무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저는 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주무관 ○○○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의안번호 제2017-27호 수집연구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27호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중에서 박정희 작가의 작품 구입 건에 대한 물품검사(수)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인 시립미술관에서는 작품의 가격정보는 작가의 향후 미술시장 내에서의 작품 가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의 영업상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미술계 내부의 작품 시장 가격 형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지난 제9차 심의회에서 직권심의 안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타 박물관 의견서 등 추가자료를 보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오늘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계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저희 미술관의 입장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작품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조금 보충하면서 독립기관들을 조사해보니 미술관의 작품 가격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작가나 혹은 매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작품구입 확인서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난번에 질의는 다 했고요, 저는 이것이 예전에 서울시를 상대로 했던 광고비 집행내역에 관한 심판과 똑같다고 봅니다. 신문사별로 광고비가 다른데, 신문사에서는 이것이 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개하게끔 나와 있고, 시 조례에도 공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면 그동안 미술계에서 암묵적으로 가져왔던 규칙들이 깨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계에 물어봤더니 “사실 단가를 상당히 떨어뜨려서 시립미술관에 납품하고 있고 그런 작가의 현실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타 시도 미술관 5개 의견서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놀랍게도 미술관들이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인지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홈페이지에 미술관 작품 목록이 찍혀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미술관계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 주무관>

- 네, 몰랐죠. 미술관 내부에서 문서를 기안하거나 계약문서를 작성할 때에 미술관 내에서도 다른 직원이 열람을 하지 못 하도록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 내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부직원 사이에서도 철저히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보공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기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 주무관>

- 그렇죠.

<○○○ 위원>

- 이것은 관례냐 법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례가 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법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 법을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미술품 가격만 제외한다.”라고 법을 바꾸든지 조례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비공개에 대한 실익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개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주무관>

- 사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 못할 이유도 없고 시민들이 작품가격을 몰라

야 한다는 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인정을 합니다.

- 그런데 관례적으로 미술계에서 공히 다 비공개를 하고 있고, 사실 전국 미술관이 모두 다 계약 쪽 사이트에서는 다 공개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다들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본청이나 각 해당 재무부서에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시의 소속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국·공립 미술관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국·공립 미술관이 합의해서 “이것은 모두 다 공개를 하자.”라고 합의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데 오늘 이것이 비공개로 결정된다면 제가 볼 때 언론에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삿거리입니다.
- 또 우리가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비공개 타당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공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주심으로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주무관〉

-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비공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 편에서는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하다못해 이것을 작가명으로 공개하지 않고 작품명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 위원〉

- 그럴 수 있습니다.

〈○○○ 주무관〉

- 그런데 작품명이라는 것이 사실 커다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공개를 해야 된다면 공개의 방법 부분에 있어서 그런 방법도 사실은 이것을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 이것이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추출해서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시스템 코딩을 다시 하던 되는 할테지만 굳이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일부의 컬럼을 지우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공개하라는 얘기죠.

〈○○○ 위원〉

- 저도 사실 한참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뮤지엄 프라이스 공개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문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립미술관이나 국·공립 미술관을 통해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거나 이런 좀 나아간 이익 같은 측면에서 충분히 목적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법령상 공개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이 건은 공개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고려해 가지고 데이터를 적절하게 공개한다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

-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해야 된다면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공개할 때 가격 말고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개한다거나, 이런 오히려 작가 분들을 배려하는 다른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서 반사적 불이익이어서 그것을 본인이 감안하고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립미술관에 소장됐다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이나 작품의 퀄리티가 높다는 점을 같이 공개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번 심의시 제가 비공개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공개했을 때 당장 작가들이 작품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것 외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뮤지엄 프라이스라는 것이 적게는 20%, 30%, 가격이 너무 높게 들어왔다 그러면 50%까지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작가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와의 계약에 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시

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다르고, 또 해외시장가는 좀 더 다릅니다.

<○○○ 위원>

- 말씀을 들어봐서는 단기적으로 약간은 작가들이 작품을 주기를 꺼려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뮤지엄 프라이스에 대한 기준이 형성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주무관>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50%가 쳐질 것들을 감안해서 작품 판매가를 내기 때문에 점점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원>

- 원칙적으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작가들이 작품가가 공개되니까 낮은 가격으로 작품을 주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을 전제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주무관>

- 그럴 수도 있죠. 과도기를 지나다 보면 안정화 단계에서 머물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것 외에 주무관님이 생각하시는 공개했을 때 특별한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이 더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공개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례로 비공개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 주무관>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한다면 저희 쪽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국·공립 미술관계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술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원칙적으로 국가가 쓰는 예산은 국민이나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비공개를 시에는 공개를 하면 안 될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울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술시장 전체가 공개를 원칙으로 재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주무관>

- 이것이 사실은 정보공개를 위한 심의이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개인정보와 정보공개가 다투는 형식이라고 보이는데, 개인정보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위원>

- 작가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간사>

- 이것이 경영·영업상의 정보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주무관〉

- 저희가 주장하기에는 A작가의 작품이 1,000만 원에 팔렸다는 것이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사〉

- 그러면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판단 여지는 있지만 개인정보로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다. 경영·영업상의 정보하고 개인정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 주무관〉

- 저희가 기안문을 만들 때 공개, 비공개를 설정하는데,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해서 그것을 설정해서 비밀로 처리한다고,

〈간사〉

- 개인정보와 경영·영업상 비밀은 다른 것이고, 저희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경영이나 영업상의 정보이냐를 가지고 다뤘다는 겁니다.

〈○○○ 주무관〉

-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5호라고 얘기한다면요?

〈○○○ 위원〉

- 그러니까 5호, 6호, 7호를 다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5호라고 이야기해도 지금 위원회 전체에서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6호가 프라이버시인데 가격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끝났고,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공개이익이 더 크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주무관〉

○ 알겠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직권심의 건은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7-41호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15년 시내버스 평가결과 중 00자동차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 위원〉

○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41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안녕하세요?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에 근무하고 있는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의안번호 제2017-41호 버스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41호 버스정책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지난 서울 시내버스 회사별 서비스평가순위, 성과금, 00자동차 서비스평가 내용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하였고, 지난 8월 00자동차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 및 부수적인 평가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00자동차 평가항목 개별점수는 민간업체의 사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이 유출 가능한 정보로 공개 시 해당업체의 영업상의 지위 등 정

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고,

- 청구인은 2014년 정보권리 청구에 따라 공개되었던 자료로서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계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청구 목적이 뭐죠?

〈○○○ 주무관〉

- 이런 정보는 노조 쪽에서 많이 청구하고 있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표준운송원가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에 이윤의 반을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통해서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좋은 회사는 그 이윤에서 조금 더 가져가고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그 성과이윤은 ‘자기네들도 열심히 했으니 회사에서도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약간 분쟁이 있습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세부항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주무관>

-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서 서비스, 안전, 경영분야에 대해서 한 30개 항목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지금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

- 2014년도는 공개했는데 왜 그 뒤에는 공개를 못 한다고 하는 겁니까?

<○○○ 주무관>

- 당시에 계속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선에서 공개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그것을 공개할 때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주무관>

- 왜냐하면 각 회사에게도 자기들 회사의 점수만 공개를 해 주고 있고 다른 버스회사들에게는 다른 버스회사들의 점수는 공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 버스들이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 공개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은 있는데요, 지금 사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사실상 공영버스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 상황이라면 버스회사들의 평가항목별 점수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어서 버스회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가면 버스회사의 세부정보가 다른 버스회사에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노하우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평가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노하우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모든 회사들의 평가결과를 꼭 공개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 주무관>

○ 그래서 등급이랑 순위는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 위원>

○ 세부적인 항목 모두가 다 공개되면 안 되는 겁니까?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로 경영상의 노하우가 나가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 주무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도 평가결과를 공표할 때는 분야별로, 등급별로 공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이의신청서를 보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평가의 공정성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지,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이 사안에서 세부적인 항목까지 공개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막연히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2014년에 공개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 저는 버스정책과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공개 결정한 것을 지금 비공개 한다면 형평성이 없어지고,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그 부분은 전임담당자 때 처리된 부분이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 위원>

- 전임이 공개결정 한 것을 보시고도 다시 비공개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기존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든지 해야지, 청구인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의신청서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행정에 대한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행정낭비 아닙니까?

<○○○ 주무관>

- 그래서 조례상으로 평가결과에 대해서 '16년 평가결과부터는 공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표시에도 상위법령이 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야별, 등급별로, 경영평가 부분은 제외하고 공표하게 되

어 있습니다. '16년 결과는 지금 산정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아마 다 공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항목, 각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 위원>

○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을 비공개해야 됩니까?

<○○○ 주무관>

○ 지금 경영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 위원>

○ 저번에도 이것을 다 공개 안 하셨습니까?

<○○○ 주무관>

○ '13년도에는 각 그 회사의 점수만 공개가 됐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사정변경이 없으면 그냥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비공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연히 '이것을 공개하면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문제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회사의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경영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청구인도 조금 설득력 있게 느낄 겁니다.

○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에 이익이 있을 때 비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공개의 이유를 우리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조금 더 명확하게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온다

는 것이죠.

<○○○ 주무관>

- 경영효율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버스회사의 경영정보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 위원>

- 영업이익률 항목에 60점, 50점 이것이 점수죠?

<○○○ 주무관>

- 네. 세부평가기준에 각 항목 점수 산정방법이 나옵니다.

<○○○ 위원>

- 산정방식에 따른 점수일 텐데, 이 수치가 그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였으면 그 회사의 현재 영업상태를 유출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한 번 점수화 되어서 변환된 데이터에 불과하고, 어떤 회사의 사업실적이나 영업전략이 들어가지도 않고, 경영상·영업상의 비밀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 그래서 이 데이터를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나 영업전략, 사업실적들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비공개 대상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풀어봐 주시면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회사의 영업상의 지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무관>

- 항목 중 퇴직금 금융기관 예치실적을 보면 예치실적 퍼센티지에 따라서 각각 회사의 점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면 만점, 80에서 몇 %면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알

게 되면 그 회사의 경영정보까지 거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공영버스인데 알려지면 안 됩니까? 원래 그런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그래서 저희가 경영정보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 위원>

- 세부적인 항목에서 퇴직금 예치실적 이런 것이 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 주무관>

- 그렇죠.

<○○○ 위원>

- 비밀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 주무관>

- 평가분야에서 경영효율화 부분에 보면 거기에 있는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이자배상배율이 있고,

<○○○ 위원>

- 상장회사들은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이런 것들은 다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장 회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들은 주주들한테 다 공개하는 항목들 아닙니까?

<○○○ 위원>

- 더군다나 시의 지원을 받거나 시민과 관련되는 안전성과 관련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저희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범위를 세부적인 항목별로 점수를 다 보여주느냐, 아니면 분야별로 보여주느냐인데,

<○○○ 위원>

-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이미 다 공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손익계산서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경영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 위원>

- 영업이익률 60이라는 것이 그 회사가 영업이익률일 몇 %인지가 아니고 환산된 평가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점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 주무관>

- 그런데 저희가 이 평가기준 자체도 지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 그러니까 이 평가점수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위원>

- 제가 볼 때는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에서 바뀐 것이 없고, 이분이 이의신청서도 잘 쓰셨어요.

<○○○ 위원>

- 제3자 의견을 보면 당사자가 회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시에서 직접 정보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 몇 호에 해당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 위원>

- 버스정책과에서 계속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텐데, 과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공개했던 것을 지금 비공개하시려면, 이분들이 노조 활동하시면서 또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 위원>

- 2014년도에 이 정보를 공개해서 과에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 주무관>

- 회사랑 청구인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주무관>

- 서울시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때는 누가 들었을 때도 ‘아, 저런 것은 공개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설득력 있게 올리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항은 공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

- 본 이의신청 건은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 2017-42호 제3자 이의신청 】

안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 결재문서

〈○○○ 위원〉

-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7-42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께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저는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노선팀에 근무하는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의안번호 제2017-42호 버스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42호 버스정책과 소관 제3자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2차, 3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통보 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개 결정하였으나,
- 제3자인 동아운수에서 자사의 차량현황 및 노선별 운행계통 등 경영 노하우와 감차보상금 등 수입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

출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면서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계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버스회사에서 운행계통이나 차량대수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제 공해야 될 정보라고 판단됩니다.
- 또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내용은 버스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께서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아마도 운행계통이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특별하게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실익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 혹시 감차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청구인 측에서 왜 감차보상금 내용을 특정을 해서 이 부분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감차보상금은 마을버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증차를 해서 납부한 부담금을 가지고 있다가 버스회사에서 감차를 하게 되면 해당 회사에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투명하게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

-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감차가 이루어 졌을 때 그에 따라 정해지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감차 자체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까지는 않은데 감차보상금은 정해진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감차 여부도 여기 운행계통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특별하게 감차보상금을 공개한다고 해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도 되어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강하게 시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주무관>

- 열핏 듣기로는 버스기사가 감차를 하게 되면 본인 운행시간과 수입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회사 측에서 임의적으로 감차를 한 겁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정상차량의 한 50%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을 예비차라고 하는데 보통 예비차가 있으면 보유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업체도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시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비차 일부를 감차나 상용차로 전환한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 버스기사가 운행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사하고 다투는 과정에 회사에서도 그 정보가 조금 민감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애초에 정보공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서울시에서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비공개 신청을 한 겁니까?

<○○○ 주무관>

-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3자 의견을 버스회사에다가 의견조회를 해야 하고, 청구인은 버스기사로 알고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이런 이유로 비공개 요

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정책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하려는 내용입니다.

<○○○ 위원>

- 회사가 차를 몇 대 운영하고 몇 대 줄이고, 이것은 직원들이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텐데,

<○○○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든 안 주든 회사정책의 문제겠지만 일단 당연히 공개되
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제3자 이의신청 건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 주무관>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 2017-43호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중 특정업체의 직원 입·퇴사 현황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7-43호 재생협력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계서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재생협력과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간사께서는 의안번호 제2017-43호 재생협력과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43호 재생협력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직원의 입·퇴사 등 신상내역 및 업체의 재무제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7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직원의 입·퇴사 현황에 한정하여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 소관부서 주무관계서는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더 없습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처음 청구한 내용에서 상당부분 개인정보는 빼고 입·퇴사 관련부분만 달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관부서에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주무관>

○ 일단 의견청취시 제3자에서도 비공개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입·퇴사 기록 자체가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

○ 청구인이 요구하는 것은 연도별로 몇 명 입사하고 퇴사하는지를 이런 부분 아 납니까?

<○○○ 주무관>

○ 정보공개 청구와 별개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분이 요청하시는 정보는 A라는 해당 특정인이 이 업체에 근무하는지 여부입니다.

<○○○ 위원>

○ 근무하고 있습니까?

<○○○ 주무관>

○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면 안 됩니까?

〈○○○ 주무관〉

- 민원은 별도로 근무 중이라고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

- 최대관심사는 법적인 효력에 의한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느냐는 것을 알고 싶은데, 민원하고 별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그렇습니다. 내부사정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위반업체 명단 같은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도 공개되고 있고, 해당 내역은 자치구로 통보하고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 어디까지 공개되는 겁니까?

〈○○○ 주무관〉

- 어떤 기술인력 몇 명 정도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위반내역도 업체명, 위반내역, 법령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주무관〉

-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해도, 재무제표도 등록요건이기 때문에 등록요건

미달인 경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주무관〉

- 재개발·재건축할 때 주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시공사나 시행사가 계약되기 전까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동의서를 징구하는 일부터 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요건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분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형사적인 사안으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런 청구를 하는 거죠.

〈○○○ 위원〉

- 정비사업 업체가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 주무관〉

- 개인적인 회사입니다.

〈○○○ 위원〉

-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 위원〉

- 민간회사인데 거기의 직원 내역과 입·퇴사 내역을 다 달라라고 하는,

〈○○○ 위원〉

- 그런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고, 공신력 있는 업체라는 것을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확인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민간인 요건을 정하고 다 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들한테 누가 언제 입사해서 퇴사하는지를 공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주무관〉

- 내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

- 저는 입·퇴사 현황 통계자료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별 사람 성명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구하는 내용이 개인별 입사, 퇴사시기 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주무관〉

- 기술인력 개개인의 입·퇴사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직원들의, 기술인력의 입·퇴사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개별적인 사람의 명단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제출서류에 ‘입·퇴사 기록’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11페이지, 25페이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일자 등 정보가 그나마 유사한 정보입니다.

<○○○ 위원>

- 4대 보험 가입자 연명부라든지 취득일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다 개인정보네요. 특별하게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제출받은 서류가 건강보험자격 취득확인서하고 4대 보험이 다입니다.

<○○○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개하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개인 이름, 주민번호, 재직 사실과 기한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입·퇴사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9조제7호에 법인의 정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 이의신청서 보면 그것이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제9조제7호에 법인의 정보로 비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저는 법인의 정보 중 일정 정도는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정작 제가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판단할 실익은 없는 것 같고, 해당 부분들은 문서를 포함한 개인별 4대 보험 취득일 같은 부분은 다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다수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43호는 기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이상으로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